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이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연속2회 미제출 및 연락두절로 수급자격 미달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료(중단)하고 결정 통보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3.15.

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- 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결정 통보
- 2. 근 거 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, 제29조제1항제9호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문○진	1984.8.25.	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(중단) 결정 통보	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, 제29조제1항 제9호, 시행규칙 제2항제1호	취업지원서비스 종료	연속 2회 미제출 및 연락두절	평택시 지산로 팽성읍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4. 3. 15. ~ 2024. 3. 29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김명자(031-646-124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